

## 7 복지 / 민간지원

###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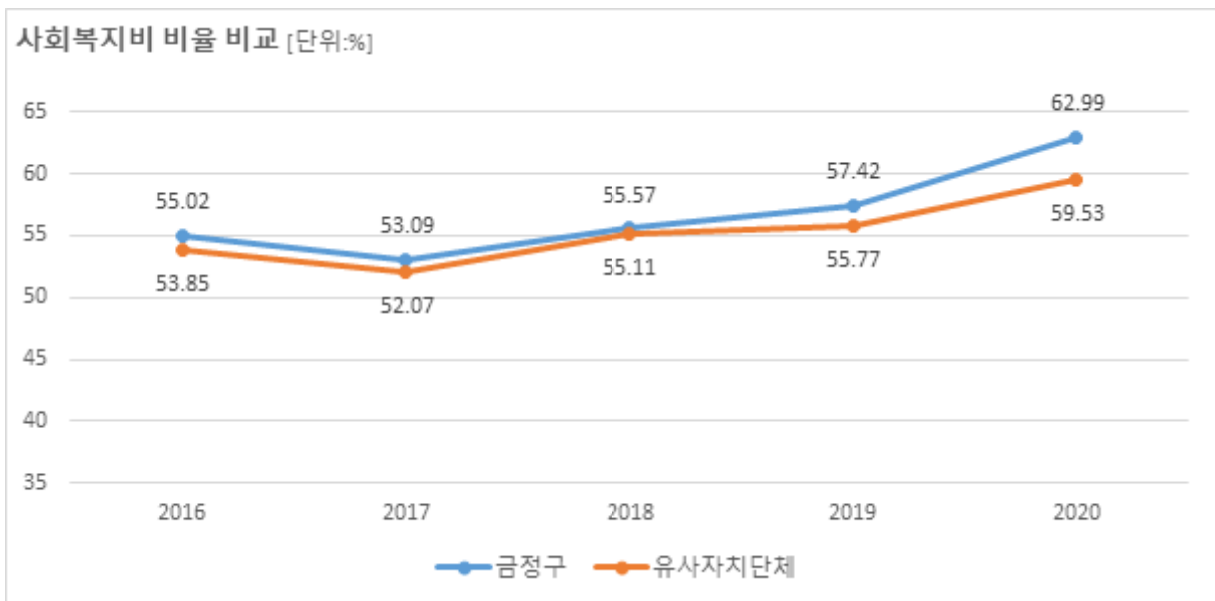
구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357,202	49,033	77,247	43,087	114,474	7,648	0	0	65,710
국비	250,913	38,450	40,687	23,595	86,047	5,660	0	0	56,473
시·도비	76,229	3,116	22,992	15,763	23,943	1,177	0	0	9,237
시·군·구비	30,060	7,467	13,568	3,729	4,484	811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04,629	340,199	354,248	414,970	567,069
사회복지분야(B)	167,619	180,605	196,851	238,271	357,201
사회복지분야비율(B/A)	55.02	53.09	55.57	57.42	62.99
인구수(C)	244,624	244,469	242,956	239,062	232,66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85	739	810	997	1,535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76,841	59,657	10.34	
민간경상보조 (307-02)		3,161	0.55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689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16	0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7,950	4.8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7,741	4.81	
민간자본보조 (402-01)		100	0.0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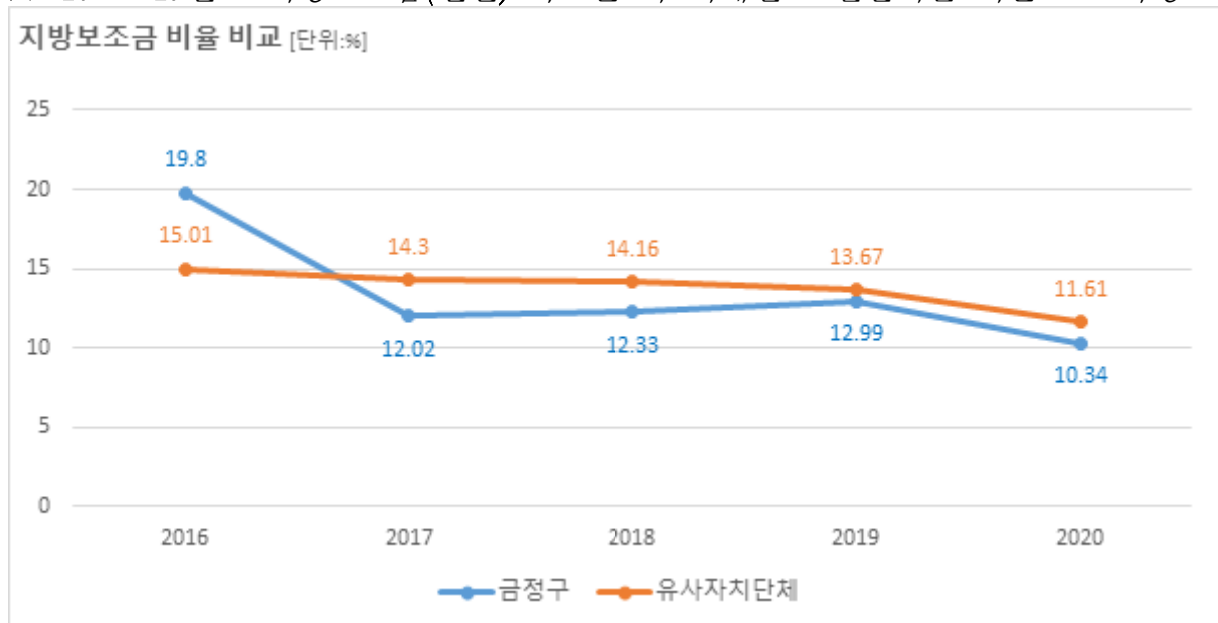
###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04,629	340,199	363,624	423,784	576,841
지방보조금(민간)	60,303	40,901	44,842	55,065	59,657
비율	19.80%	12.02%	12.33%	12.99%	10.34%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6 ~ '19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첨3】**

###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환수액)
보훈선양사업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5	보조금의 무단 인출 및 타용도 사용	'20.9.18.	교부취소 및 환수, 주의조치 (3,900천원)

###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567,069	426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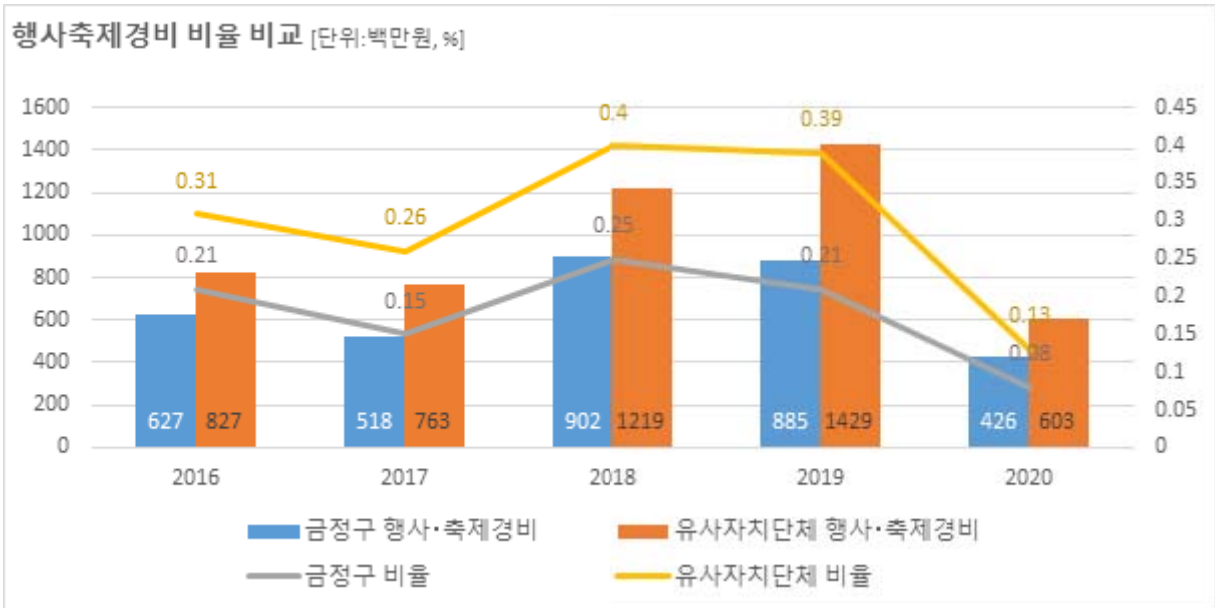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04,629	340,199	354,248	414,970	567,069
행사·축제경비	627	518	902	885	426
비율	0.21	0.15	0.25	0.21	0.08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우리 구의 2020년 행사·축제경비는 426백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행사·축제가 취소되거나 축소 개최되어, 전년도 대비 45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